

의안번호	2217046
의 퇴 인	최은석의원
회 답 일	2026.8.12.
추계번호	26D1138

회계기본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실무위원회·사무국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1억 300만원, 2031년 33억 6,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59억 8,300만원(연평균 31억 9,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3,103	3,076	3,170	3,267	3,367	15,983	3,197

주: 본 추계는 회의참석수당 단가, 인건비 단가 등 금융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국가회계위원회 설치)	법인등의 회계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회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제1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제2항), 위원장 및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위원은 비상임으로 함(제3항)	의무규정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함(제1항)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1명 3.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1명 4. 대학에서 회계 분야에 10년 이상 재직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사단법인 한국회계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1명 5.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대표 1명 6.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대표 1명 7.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의 대표 1명	의무규정
3	안 제9조(실무위원회)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를 둠	의무규정
4	안 제10조(위원회의 사무국 등)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함)을 둠	의무규정
5	안 제18조(회계감독원의 설립 등)	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법인등의 회계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감독원을 설립(제1항) 회계감독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함(제2항)	의무규정
6	안 제19조(회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위원회는 회계투명성의 가치가 제고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문화행사 등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	의무규정
7	안 제20조(회계의 날)	회계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정함(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회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21조(회계 교육 강화)	정부는 국민의 회계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회계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정부는 회계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회계 관련 학과나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정부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회계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9	안 제22조(회계 전문인력 양성)	정부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정부는 회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금융계,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과 협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정부는 회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이나 사업자 등에 대하여 교육설비, 교재개발, 교육 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0	안 제23조(회계 연구기관 등의 육성)	정부는 회계 관련 제도나 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연구기관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정부는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제·개정, 회계 정보 공시방법 수립, 회계감독체계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정부는 제1항의 연구기관이나 제2항의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이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1	안 제27조(포상)	정부는 회계투명성 제고에 관한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회계전문인력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2	안 제28조(지원)	정부는 이 법에 따른 회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회계제도 개선을 실시하거나 실시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국가회계위원회 설치)	O	—
2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3	안 제9조(실무위원회)	O	—
4	안 제10조(위원회의 사무국 등)	O	—
5	안 제18조(회계감독원의 설립 등)	×	회계감독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안 제19조(회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미대상)	동 조문은 교육, 홍보, 문화행사 등의 시책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추가재정 소요는 회계의 날(안 제21조), 회계교육강화(안 제22조) 등 개별조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7	안 제20조(회계의 날)	— (미대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8조의2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에 따라 회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음
8	안 제21조(회계 교육 강화)	×	현재 정규 교육과정에 회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제정안에 따른 회계교육 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곤란함
9	안 제22조(회계 전문인력 양성)	×	현재 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등에서 회계 전문인력 양성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제정안에 따른 회계 전문인력 양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곤란함
10	안 제23조(회계 연구기관 등의 육성)	×	현재 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에 회계연구기관(회계정책연구원, 회계연구센터)이 설치되어 있고, 제정안에 따른 출연·보조의 구체적 범위와 대상을 예측하기 곤란함
11	안 제27조(포상)	— (미대상)	회계의 날(10. 31.)을 기념하여 회계투명성 제고 유공자 등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있음
12	안 제28조(지원)	×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모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가회계위원회(안 제5조 및 제7조, 이하 “위원회”라 함)와 실무위원회(안 제9조)의 회의참석수당과 사무국의 설치·운영(안 제10조)에 따른 인건비·기본경비에 한정하여 추계함
- 위원회의 정수는 9명으로 하고, 이 중 회의참석수당 지급대상인 비상임위원은 7명으로, 회의개최횟수는 연 4회로 가정함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비상임위원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명을 제외한 7명임
 - 회의개최횟수는 위원회의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연 4회로 가정함
-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의 보수는 금융위원회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상임위원 2명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가정하고 추계함
- 실무위원회 정수는 9명으로 하고, 이 중 회의참석수당 지급대상인 비상임위원은 7명으로, 회의개최횟수는 연 4회로 가정함
 - 실무위원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함
 - 회의개최횟수는 위원회의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연 4회로 가정함
-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비상임위원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50만원으로 가정함(회의참석수당 20만원, 안전검토사례금 30만원)
- 위원회의 지원조직인 사무국의 직급별 정원과 직급별 보수연액은 금융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추정함

[표 2] 위원회 사무국의 직급별 정원(안): 2026년 기준

(단위: 명)

구분	고위공무원	4급	5급	6급 이하	소계
정원	1	3	10	7	21

자료: 금융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3] 위원회 사무국의 직급별 보수연액: 2025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직급	급여체계	1인당 보수연액(평균)
사무국	고위공무원	연봉제	140,131
	과장(4급)	연봉제	107,327
	5급	연봉제	77,304
	6급 이하	호봉제	58,648

자료: 금융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사무국의 인건비는 2025년 기준 금융위원회의 직급별 보수연액을 참고하고, 기본경비는 금융위원회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중(29.02%)¹⁾을 적용하여 추정함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사회보험 기관부담 요율, 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정부기관) 단가²⁾를 각각 적용하여 추정함
- 다만, 위원회, 실무위원회, 사무국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은 정부서울청사의 유희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1) 2025년 일반회계 기준 보수액(33,211백만원) 대비 기본경비(9,639백만원) 비중은 29.02%임

2)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 요율,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2026.7.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3.5	3.0	3.0	3.0	3.0	3.0
기관부담 요율(%)	13.067	13.129	13.193	13.285	13.379	13.475
1인당 자산취득비(정부기관, 천원)	4,980	5,078	5,180	5,283	5,389	5,49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위원장 및 상임위원 보수(안 제7조)

1) 인건비

□ 2025년 기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보수는 1억 6,700만원, 상임위원의 보수는 1억 4,000만원이고, 이를 준용하여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인건비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 (보수) 위원장과 상임위원 평균 보수연액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적용
- (기관부담금)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사회보험 기관부담 요율 적용

[표 4] 위원장 및 상임위원 인건비 추정: 2027~2031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위원장	178	183	189	195	200	945
	상임위원	149	154	158	163	168	792
	소계	327	337	347	358	368	1,737
기관부담금		43	44	46	48	50	231
합계		370	381	393	406	418	1,968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기본경비

□ 기본경비는 금융위원회 보수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함

- 2025년 일반회계 기준 보수액(본부 인건비+소속기관 인건비, 33,211백만원) 대비 기본경비(9,639백만원)의 비율(29.02%)을 적용

□ 추계결과, 위원장 및 상임위원에 대한 기본경비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5] 위원장 및 상임위원 기본경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기본경비	보수액	327	337	347	358	368	—
	기본경비 비중	29.02%	29.02%	29.02%	29.02%	29.02%	—
합계		95	98	101	104	107	50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자산취득비

- 자산취득비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인원(2명)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1인당 자산취득비(정부기관)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자산취득비는 추계기간의 첫해에만 발생하며 이후 기본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표 6] 위원장 및 상임위원 자산취득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자산취득비	인원	2	—	—	—	—	—
	단가	5.078	—	—	—	—	—
합계		10	—	—	—	—	1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안 제5조·제7조)

-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추가재정소요는 비상임위원 수에 회의개최횟수와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
 - (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 / (회의개최횟수) 연 4회 / (회의참석수당) 회의당 50만원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400만원씩 5년간 총 7,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회,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회계정책 위원회	비상임위원 수	7	7	7	7	7	-
	회의개최횟수	4	4	4	4	4	-
	회의참석수당 단가	0.5	0.5	0.5	0.5	0.5	-
	합계	14	14	14	14	14	70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실무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안 제9조)

- 실무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비상임위원 수에 회의개최횟수와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
 - (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 / (회의개최횟수) 연 4회 / (회의참석수당) 회의당 50만원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른 실무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400만원씩 5년간 총 7,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실무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회,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실무 위원회	비상임위원 수	7	7	7	7	7	-
	회의개최횟수	4	4	4	4	4	-
	회의참석수당 단가	0.5	0.5	0.5	0.5	0.5	-
	합계	14	14	14	14	14	70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사무국(안 제10조)

1) 인건비

- 제정안에 따른 사무국(21명) 인건비는 보수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을 합산하여 추계함
 - (보수) 직급별 인원에 직급별 1인당 평균 보수연액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적용

- (기관부담금) 금융위원회 직급별 평균 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사회보험 기관부담 요율 적용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른 사무국의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9] 사무국의 인건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고위공무원	149	154	158	163	168	792
	4급	343	354	364	375	386	1,822
	5급	824	849	874	901	928	4,376
	6급 이하	438	451	464	478	493	2,324
	소계	1,754	1,807	1,861	1,917	1,975	9,314
기관부담금		230	238	247	256	266	1,237
합계		1,984	2,045	2,108	2,173	2,241	10,551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기본경비

□ 기본경비는 금융위원회 보수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함

- 2025년 일반회계 기준 보수액(본부 인건비+소속기관 인건비, 33,211백만원) 대비 기본경비(9,639백만원)의 비율(29.02%)을 적용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른 사무국의 기본경비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10] 사무국의 기본경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기본경비	보수액	1,754	1,807	1,861	1,917	1,975	—
	기본경비 비중	29.02%	29.02%	29.02%	29.02%	29.02%	—
합계		509	524	540	556	573	2,70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자산취득비

□ 자산취득비는 사무국 정원(21명)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1인당 자산취득비(정부기관)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자산취득비는 추계기간의 첫해에만 발생하며 이후 기본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표 11] 사무국의 자산취득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자산취득비	인원	21	-	-	-	-	-
	단가	5.078	-	-	-	-	-
합계		107	-	-	-	-	1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실무위원회·사무국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1억 300만원, 2031년 33억 6,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59억 8,300만원(연평균 31억 9,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2]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위원장 및 상임위원 인건비 등 (안 제7조)		475	479	494	510	525	2,483
회의참석수당 (안 제5조 등)	위원회	14	14	14	14	14	70
	실무위원회	14	14	14	14	14	70
사무국 인건비 등(안 제9조)		2,600	2,569	2,648	2,729	2,814	13,360
합계		3,103	3,076	3,170	3,267	3,367	15,983

주: 본 추계는 회의참석수당 단가, 인건비 단가 등 금융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회의참석수당 단가, 인건비 단가 등 금융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assembly.go.kr